#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충 청 북 도 의 회
교육사회위원회

##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07년 12월 3일
충청북도지사
나. 회 부 일 자: 2007년 12월 4일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07. 12. 17 제 266 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 • 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
## ㅍ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김태관 복지여성국장)

가. 제안이유
○ 2008. 1. 1 일 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 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 및 시•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.

## 나. 주요내용

○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 분의 20 을, 시•군은 100 분 의 80 을 부담함.(안 제 2 조)
○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.

## III. 검토보고 요지

## (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)

○ 본 조례안은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노령연 금법을 제정(07.4.25)하여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도는 $20 \%$, 시군은 $80 \%$ 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자치단체(도, 시군)간 부담비율을 20 대 80 으로 부담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V. 토론요지 : "생략"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O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##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| 의 안 <br> 번 호 | 193 |
| :--- | :---: |

제출연월일 : 2007년 12월 3일<br>제 출 자: 충 청 북 도 지 사

## 1. 제안이유

○ 2008. 1. 1일 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 및 시•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 분의 20 을, 시•군은 100 분의 80 을 부담함.(안 제 2 조)

○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.
3. 제정근거 : 기초노령연금법
4. 조 례 안 : 붙 임
5. 관계법령 : 붙 임

##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및 시•군 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부담기준)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 분의 20 을 부담 하며, 시•군은 100 분의 80 을 부담한다.

제 3 조(부담기준 변경 등) 도는 제2조 규정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 령 발췌

## $\square$ 기초노령연금법

제19조 (비용의 부담)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1.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 분의 40 이상 100 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을 부담한다.
2.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• 광역시•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•도"라 한다) 및 시•군•구(자치구 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상호 분담하되,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 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•도의 조례로 정하고, 미리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 $\square$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

제16조 (비용의 부담 등) (1)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도. 시•군•구별로 부담하는 연금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.
(2) 특별시•광역시•도는 매년 시•군•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 조금에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특별시•광역시•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•광 역시•도의 부담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, 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은 정산한다.
(3)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•수당을 지급하는 지 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 분의 10 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.

